성주군 지적재조사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13년 5월 일
제 출 자 : 성주군수

1. 제안이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1062호)이 2011. 09. 16. 제정되어 2012. 03. 17.부터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성주군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조직 구성과 운영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성주군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기능을 정함(안 제2조)
나. 추진단의 조직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다. 추진단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라. 추진단의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사항을 정함 (안 제5조)
마. 추진단의 조사·연구 및 여론수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붙임 1)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2013. 03.07 ~ 2013. 03.26. (20일간)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성별영향평가 : 결과요약서 (붙임 2)
(4)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3)
(5) 개별법령에 따른 입법 선행절차 : 해당사항 없음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지적재조사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성주군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성주군 지적재조사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입안 및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적재조사위원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적재조사측량 검사 및 사업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3조(조직 및 구성) ① 성주군 지적재조사추진단(이하“지적재조사추진단”이라 한다)에 단장 1인, 팀장 1인을 둔다.

② 단장은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 부서장이 되고 팀장은 지적재조사측량검사전문자격을 갖춘 시설주사로 보한다.

③ 추진단의 단원은 지적재조사측량검사 전문자격을 갖춘 자로 정한다.

제4조(사무분장) 지적재조사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수립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운영관리
3. 지적재조사 관련 위원회 조례 운영관리
4.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운영
5.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운영
6.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선정 및 조정
7. 소유자협의회 구성운영 지원
8.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민원 고충처리
9. 지적재조사 측량기준점 세계측지계 전환
10. 디지털지적 전환 추진
11. 구분지상권 - 입체지적(지하·지상) 구축 운영
12. 지적재조사 관리시스템 운영 (KLIS 연계)

13. 통합기준점 및 지적삼각점 설치·관리
14. 지적재조사 측량성과 검사 (현지 검사측량)
15. 디지털지적 전환 성과품 검사
16. 사업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7. 소규모 지적불부합지 추가조사 관리
18.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관련 국·도비 예산관리
19.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보고 및 회의자료 작성
20.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소유권 조정금 운영관리
21. 지적재조사 측량장비 관리
22. 지적재조사사업 대국민 홍보
23. 그 밖에 지적재조사와 관련한 사항

제5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단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 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조사·연구 및 여론의 수렴) ①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제6조에 따른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